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공포(2015. 4. 29.)

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15.4.16.) 및 제6회 조례 규칙심의회(2015.4.23.)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포일자 : 2015. 4. 29.

나. 공포 자치법규 : 5건(조례 5건)

연번	안 건 명	공포번호	부서명
< 조 례 >			
1	<u>서울특별시 중구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</u> →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우리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계약서 작성평가, 경영실적 평가 등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	제1255호	기획예산과
2	<u>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</u> 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- 종로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('15년~'16년 75%, '17년~'18년 50%) -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(추가 경감율 50% 적용) -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(2014.12.31.)	제1256호	세무1과
3	<u>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</u> (정희창 의원 외 3인 발의) →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“2016년 1월 1일”에서 “공포한 날”로 하고, 경과조치 단서 조항에 제외기관 명시	제1257호	복지지원과
4	<u>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</u> (정희창 의원 외 3인 발의) →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“2016년 1월 1일”에서 “공포한 날”로 개정	제1258호	사회복지과
5	<u>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</u> → 금연지도원 위촉 규정 신설, 임기(2년), 연임제한(한 차례만 연장가능),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	제1259호	건강도시과

붙임 : 공포전문 각1부. 끝.

주무관	이수정	의회법제팀장	문성수	기획예산과장	장형태	기획재정국장	박진석
부구청장	김찬곤	구청장	전결 04/27 최창식				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5119 (2015.4.27) 접수 ()
우 140-889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 본관4층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
전화 3396-4932 /전송 3396-8663(8664) / sjbeckham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